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6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김형동・박정하・우재준

서범수 · 김소희 · 권영진

한지아 · 김위상 · 조지연

서일준 · 강대식 · 박덕흠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 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② (생 략)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③
1일부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26년 12월 31일</u>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	
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	

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 1. (생략)
- 2. 2020년 1월 1일부터 <u>2024년</u>
 <u>12월 31일</u>까지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나.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 1. ~ 3. (생략)
- ③ ~ 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2026년</u>
12월 31일
가.・나. (현행과 같음)
②
<u>2026년 12월 31일</u>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